

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3월 19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3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이관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준치가 불필요함.

○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등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출연자산 내역

품 목	취득원가	감가상각누계	잔존가액
서버, PC, 비품 등	953,800천원	401,000천원	552,800천원

- 1999. 12월부터 도입된 컴퓨터 장비 및 시설, 사무용비품 등 취득가액 9억 5천만원, 잔존가액 5억 5천만원 상당의 시설·장비임.
- 본 장비는 2002.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이관 시 이관받은 물품임.

5. 검토의견

-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

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컴퓨터 등 장비와 비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
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